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629
----------	-----

제안연월일 : 2019. 4.25.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9조제2항)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 (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제2호라목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2]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략)</p> <p>② <u>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u></p> <p>[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p> <p>1. (생략)</p> <p>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p>

현행	개정안
3. ~ 4. (생략)	<u>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u> 3. ~ 4. (현행과 같음)